

## 제66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 준 규

### I. 회의 개요

제66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5실무작업반 회의가 2025. 5. 12.부터 2025. 5. 16.까지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정식회의 진행에 앞서 2025. 5. 11. Brooklyn Law School 주관으로 비공식 사전회의가 개최되었다. 프랑스 대표단의 발제를 중심으로 정식회의 제2 의제 중 Part.3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 II. 회의 의제

제1 의제: 도산절차에서 자산추적 및 회복 관련 법적 문제에 관한 논의

제2 의제: 도산절차에서 준거법 관련 논의

### III. 회의 절차

분과위원회는 의장으로 Mr. Xian Yong Harold Foo (Singapore)를 선출하였다.

제1 의제 및 제2 의제 순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1 의제는 ① “도산절차에서 자산추적 및 회복 관련 UNCITRAL 사무국 Note (도구목록 및 배경노트): A/CN.9/ WG.V/WP.201”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2 의제는 “도산절차에서 준거법 관련 UNCITRAL 사무

국 Note: A/CN.9/ WG.V/WP.202”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내도산절차의 국외적 효력의 제한에 관한 네덜란드 대표단의 제안: A/ CN.9/WG.V/LXVI/CRP.2”은 시간관계상 논의되지 못함.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 IV. 회의 의제에 관한 주요 논의 내용

##### 1. 제1 의제: 도산절차에서 자산 추적 및 회복 관련 법적 쟁점

###### 가. 배경 및 경과

제1 의제는 미국 대표단이 2017년 제52차 실무회의에서 제안하였다. 그 후 실무회의 논의를 거쳐 2021년 제54차 본회의에서 제1 의제를 실무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였다. 제59차 실무회의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이번 제66차 실무회의를 통해 문서가 완성되었다.

###### 나. 논의내용

세부적인 자구수정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각 국가 또는 영미법/대륙법 특유의 법률용어는 본문이 아니라 각주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특별한 이슈가 없어 하루 만에 논의가 끝났다.

###### 다. 최종 채택

실무회의 이후 2025. 7. 14. 개최된 본회의에서 실무회의 작업 결과물이 수정 없이 최종 채택되었다. 채택된 문서의 제목은 “Asset Tracing and Recovery in Insolvency Proceedings: UNCITRAL Toolkit and Background Notes”이다.

##### 2. 제2 의제: 도산절차에서 준거법 관련

###### 가. 배경 및 경과

제2 의제는 EU 대표단이 2018년 제51차 본회의 및 2019년 제52차 본회의에서 제안하였

다. 그 후 논의를 거쳐 2021년 제54차 본회의에서 제2 의제를 실무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였다. 제59차 실무회의에서 논의가 개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제 자체가 어렵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논의 진행이 더딘 편이다. 이번 66차 실무회의에서도 여러 격론이 이루어졌으나 의견이 하나로 모인 쟁점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제2 의제는 도산절차에서의 준거법을 통일시키고 도산법정지법(=도산절차개시국법)의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도산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COMI(주된 이익의 중심지)를 중심으로 한 UNCITRAL의 기존 규범은 도산절차에서의 보편주의(universalism)를 제한적으로, 절차법 중심으로 구현한 것이었다. 이를 수정된 보편주의(modified universalism) 또는 절차적 보편주의(procedural universalism)라 부르기도 한다. 준거법 통일은 도산절차에서의 보편주의를 강화하고 완성하는 작업의 마지막 퍼즐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실체적 보편주의(substantive universalism).

## 나. 논의내용

### ※ 논의의 대전제

|                                                                                                                                                                                                                                                                                                                                                                                                                                                                                                                                                                                                                                                                                                                                                                                                                                                                                                                                                     |
|-----------------------------------------------------------------------------------------------------------------------------------------------------------------------------------------------------------------------------------------------------------------------------------------------------------------------------------------------------------------------------------------------------------------------------------------------------------------------------------------------------------------------------------------------------------------------------------------------------------------------------------------------------------------------------------------------------------------------------------------------------------------------------------------------------------------------------------------------------------------------------------------------------------------------------------------------------|
| <p>UNCITRAL 초안은 <b>도산절차가 개시된 나라(originating country)의 법원이 어떠한 준거법을 따라야 하는지만 규율함</b>(Chapter.2). Chapter.2의 준거법 결정 구조는 다음과 같음.</p> <p>① 원칙: 도산법정지법(국내법) &amp; 도산법정지법이 적용되는 사안을 '예시'로 들고 있음.</p> <p>② 예외: 담보권/물권, 부인권, 상계, 근로계약, 지급결제 제도, 넷팅 ☞ 이번 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p> <p>③ 예외의 예외: 예외에 따르면 공서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외국법 적용을 거부하고 원칙으로 돌아가 국내법(도산법 또는 도산법 이외의 법)을 적용할 수 있음.</p> <p>UNCITRAL 초안은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나라(receiving country)의 법원이 어떠한 준거법을 따라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 나라 법원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를 통해 도산법정지법(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규정만 두고 있음(Chapter.3). ☞ 정식회의 및 정식회의 개최 전 열린 비공식 사전회의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유연하고 다소 추상적인' Chapter 3의 구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p> <p>EU 도산규정이나 이를 기초로 입법된 독일도산법에서 준거법 조항은 originating country인지, receiving country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적용되는 쌍면적 규정이다. 즉, 도산법정지법 원칙은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까지 염두에 둔 원칙이다. 이에 반해 UNCITRAL 초안의 준거법 규정은 originating country에만 적용되는 편면적 규정이다. 즉 <b>도산법정지법 원칙은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만을 염두에 둔 원칙이다.</b></p> |
|-----------------------------------------------------------------------------------------------------------------------------------------------------------------------------------------------------------------------------------------------------------------------------------------------------------------------------------------------------------------------------------------------------------------------------------------------------------------------------------------------------------------------------------------------------------------------------------------------------------------------------------------------------------------------------------------------------------------------------------------------------------------------------------------------------------------------------------------------------------------------------------------------------------------------------------------------------|

국내 도산법을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하라는 것이다(이러한 원칙에 반대하는 나라는 당연히 거의 없음).

EU 도산규정처럼 개별 나라를 구속하는 법규범을 만들 수 없고 모델법/입법지침을 만들 수밖에 없는 UNCITRAL로서는, 최대한 많은 나라가 모델법/입법지침을 수용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receiving country의 준거법까지 정하기는 현 단계에서 쉽지 않고 설령 정하더라도 많은 나라가 이에 반발하여 모델법/입법지침을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면적 준거법 규정을 우선 마련한 것이다. step by step 접근법 또는 점진주의(incrementalism) 접근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UNCITRAL 초안의 구조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 receiving country에게 실효성이 없는 준거법 규정이라면 반쪽짜리 규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실무작업반의 논의도 위와 같은 대전제를 인정하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EU 도산규정처럼 쌍면적 규정을 만들자는 제안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1) 담보권/물권

원칙: 채무자 자산에 관한 “담보권/물권”의 취급은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원칙.

예외: 다음 경우 물건소재지법을 적용. [적절한 보호]

- ① 도산법정지법에 따른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물권의 취급이 물건소재지법과 비교해 해당 자산의 가치를 [상당히] 훼손하는 경우, 또는
- ② 도산법정지법에 따른 채무자의 동산/부동산에 대한 담보권/물권의 취급이 물건소재지법과 비교해 담보권/물권의 적시 청산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쟁점이다.

- 의견이 모이지 않은 핵심 쟁점은, ① 담보권만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물권 전체를 규율할 것인지, ② 부동산만 규율할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과 동산 모두 규율할 것인지이다. 우리 대표단은 ‘유연하고 중립적이며 실효성 있는 포괄적’ 규율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물권 전체 + 부동산 & 동산 모두 규율하는 안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방향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문제는 법리적 문제라기보다 정책적 결단의 문제에 가깝다,

- 동산을 포함한다면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이해함이 적절하므로 다양한 유형의 자산(채권,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동산에 대한 준거법은 반드시 물건소재지법이 아닐 수 있으므로, 도산법정지법과의 비교대상을 물건소재지법에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리 대표단은 이점을 고려하여 **“물권/담보권에 대한 준거법”(law governing secured claim/right in rem)**이라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인 문구가 적절하고, 이 준거법은 originating state의 국제사법(도산절차 외부에서의 준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주석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견해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사무국 담당자와의 사적 대화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물건소재지를 확정하는 **기준시점**(= 도산절차 개시시점)을 주석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타당한 견해라고 판단된다.

## (2) 부인권

- 도산법정지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요건(수익자 입장에서 도산법정지법에 따른 부인권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safeguard)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 COMI의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option 1이 지지를 얻어 채택**되었다. option 1은 우리 대표단도 처음부터 지지한 안이다.
- 이러한 safeguard는 부인대상행위인 계약의 준거법을 기준으로 safeguard를 마련한 EU 도산규정과 대비된다. UNCITRAL 규범이 더 보편주의에 친화적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 우리 대표단은 부인권에 이러한 safeguard를 마련한다면, 도산해지조항에 관해서도 비슷한 safeguard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난번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주장하였으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사적인 자리에서 회의 참가자들과 얘기해 본 결과, **도산해지조항을 마련한 계약당사자들을 굳이 safeguard를 적용해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생각(=신뢰보호 필요성의 차별화)에 대해 논리적/이론적으로 반박할 수 있다. 참고로 EU도산규정은 이 문제를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EU도산규정 주석서를 보면 우리 대표단의 입장과 결을 같이하는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① 현재와 같이 보더라도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② 현재 논의상황이 -내적 부정합성은 있을지언정-오히려 도산절차에서 보편주의와 더 친화적이며, ③ 우리나라 국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도 아니므로 더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 (3) 상계

- ㉠ 부인권에서의 safeguard와 마찬가지로 상계에서도 COMI의 법을 적용하자는 캐나

다, ⑥ safeguard를 인정하되 수동채권에 대한 준거법을 적용하자는 EU(EU도산규정의 내용이 이와 같다), ⑦ safeguard를 없애고 상계권 발생(도산절차 밖 상계의 준거법 적용)과 도산절차에서 상계의 취급(도산법정지법 적용)을 구별하자는 미국의 입장이 예리하게 충돌하였고, 결국 의견이 모이지 않은 채 논의가 종료되었다.

- 이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상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라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평시 상계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산절차 밖에서도 국제적 규범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데, 도산절차 안에서 국제적 규범통일을 피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것이다. 상계라는 제도 자체가 hybrid적 성격(절차법+실체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약불가능한(incommensurable) 문제라고 판단된다.

- 우리 대표단은 국제도산에서 보편주의에 보다 충실한 점, 평시 상계의 준거법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조항이 바람직한 점을 고려해 ①안을 지지하였다. 다만, 기존 ①안(option 2)의 자구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고, 새로운 대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option 2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위 세 가지 안 중 무엇이 채택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 ①안이 보편주의에 충실하지만, COMI를 확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 대표단은 준거법 결정 기준에 COMI를 추가하는 것 자체를 일반적으로 반대하였다.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결과적으로 큰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COMI를 기준으로 이미 구축된 UNCITRAL 규범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표단이 이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 (4) 국제중재

- 도산법정지법 원칙을 관철한 초안에 대해 여러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국제중재를 소송과 달리 특별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재반론도 유력하게 제기되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초안처럼 도산법정지법 원칙을 유지하자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표단도 같은 입장이다.

- 다만, 도산절차 개시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중재에 대해서는 법정지법, 중재지법을 ‘고려하여’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타협안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는 도산법정지법 원칙을 관철하되, 이미 진행 중인 소송과 중재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연성과 여지를 두는 방안이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중재와 앞으로 시작할 소송/중재를 차별취급할 논리필연적 이유는 없으나, 갈게 취급할 논리필연적 이유도 없다. 굳이 위와 같이 보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나, 딱히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진행된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노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으므로, 도산법정지법의 획일적 적용보다 위와 같은 유연한 해결책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중재‘절차’에 대한 준거법 논의는 도산법정지법 원칙을 적용하는 쪽으로 견해가 모이고 있으나,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① 중재계약을 쌍방미이행쌍무계약으로 취급해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함으로써 관리인의 이행거절이나 해제를 통해 도산절차 내에서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도산절차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법, 즉 *lex arbitri*를 적용해 중재계약의 실행불가능성(*unenforceability*)문제를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우리 대표단은 도산절차 내에서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한 준거법을 무엇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각 나라의 국제사법 차원에서 논의가 분분하므로, UNCITRAL 초안이 어느 하나의 길만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UNCITRAL 초안의 주석 부분에서 중재계약의 준거법을 도산법정지법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해당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UNCITRAL 초안은 유연성(다양한 선택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의견을 피력해 볼 계획이다. 현재 초안처럼 보면, *originating court*가 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해 자국 도산법이 아니라 중재지법이나 중재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봉쇄될 수 있는데, 즉 중재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봉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초안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originating court*는 자국법에 따라 중재계약의 법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다(도산법원이 자국 도산법에 따라 문제된 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법리이다!). 그 결과 중재계약을 쌍방미이행쌍무계약/관리인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계약으로 보면, 관리인은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해 중재계약을 이행거절(reject)/해지(terminate)/포기(disclaim)할 수 있다. **originating court**가 중재계약을 위와 같은 도산법적 취급이 불가능한 계약으로 보면, 도산절차 밖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재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해 중재계약의 구속력을 결정할 수 있다. 즉 **originating court**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보장된다. 국제중재와 도산처럼 논의가 분분하고 국제적 규범통일이 어려운 쟁점에 관해서는, 각 나라에 하나의 선택지만 인정하는 방안보다 두 개의 선택지를 허용하는 방안이 낫다.

#### (5)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 주식 부분의 설명을 구체화하자는 제안 이외에 별다른 논의가 없었다. 회원국들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주제이다.

#### (6) 넷팅 관련

- 도산법정지법을 적용하지 않는 넷팅 거래 등의 범위에 관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금융거래 당사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도산법정지법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해 정교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원칙: 도산법정지법 적용, 예외: 넷팅 거래 등의 경우 계약의 준거법 적용. 예외의 예외: 넷팅 거래 등과 관련한 부인권 행사나 금지명령이 문제된 경우 도산법정지법 적용.

☞ 현재 초안은 위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는데, 부인에 대해 COMI를 기준으로 한 **safeguard**를 둔 이상 넷팅 거래 등에 대해서도 부인권 행사 시 COMI를 기준으로 한 safeguard를 두는 것(예외의 예외의 예외)이 논리적이다. 우리 대표단은 이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위 주장에 대해 시간관계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번 회의에서 다시 주장할 계획이다.

#### (7) 모델법인가 입법지침인가

- 모델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입법지침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회원국이 모델법 형식을 지지하였다. **Chapter.2만 모델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 Chapter.2, 3 모두 모델법 형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었으나 후자가 다수였다.
- 우리 대표단도 **Chapter.2, 3 모두 모델법 형식을 취하는** 방안에 동의하였다.



- 최종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나, 일단 Chapter.2, 3 모두 모델법 형식을 취함을 전제로 각 조문의 형식과 내용을 가다듬기로 하였다.

#### (8) Chapter.3 관련

- originating court와 receiving court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준거법 통일을 기할 수 있는지는 Chapter.2의 section C 및 Chapter.3와 관련된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초안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기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규범이 갖는 한계(국제규범이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각 회원국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것은 어려움)가 있으므로, 최대한 유연하게, 형량요소를 가급적 많이 나열하며, 단정적이지 않고 열린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함이 차선책이다.
- Chapter.3에서 다음과 같은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① receiving court가 외국도산법을 적용할지 결정함에 있어 외국도산절차가 주절차인지 고려해야 한다. ② receiving court는 외국도산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equivalent) 내용의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제안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고, 우리 대표단도 이에 찬성의견을 피력하였다.

#### (9) 네덜란드 대표단의 제안 관련

Chapter.2의 section C 및 Chapter.3와 관련하여 네덜란드 대표단이 중요하고도 어려운 제안을 하였다. 제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originating court가 도산 주(主)절차가 아니라면, receiving state에 존재하는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의 채권실현(강제집행이나 임의 변제를 통한 채권 만족)에 대하여 간섭해서는 안 된다. 즉, 이를 부인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자의 권리행사 중지(stay)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고, 채권자가 변제받은 만큼 도산 종(從)절차 내 채권자의 채권액을 줄여 주어야 한다. 도산종절차를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 해외에 소재하는 채무자 재산은 관심 범위 밖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일견 논리적이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안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다음 2가지 때문이다;

- ①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빠진 후 아직 도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originating state(COMI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산 종절차가 진행 중이다)에서 receiving state로 옮겼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도산 종절차인 originating court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가?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재산 이동까지 도산 종결차가 수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위 제안은 준거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실질법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각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 각 나라 도산법원 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모델법에서 한쪽 나라 법원의 권한을 원칙적 봉쇄해 버리는 것은, 모델법의 전반적 취지(각 나라의 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바탕 위에 개방적 국제규범을 구축)와 어울리지 않는다. 모델법이 쌍면적 준거법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규율 공백은 “확일적이고 명확한 규칙(rule)”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나라 간 상호 예상과 협력에 기초한 유연한 기준(standard)”을 통해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유연한 기준이 점차 축적되어 나감으로써, 쌍면적 준거법 규정 마련 또는 실질법 차원에서의 국제도산법 통일이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음번 회의에서 네덜란드 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대표단은 위와 같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이다.

## VI. 결론

앞으로 논의는 제2 의제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25. 7. 14. 개최된 위원회 총회에서 앞으로 제5실무작업반이 검토할 새로운 의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CBI 모델법 입법 및 해석 지침(2013)의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었으나, 실무작업반의 새로운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무국에 전적으로 업데이트 작업을 맡길 것인지, 새로운 의제로 채택한다면 실무작업반이 검토할 부분을 어떻게 특정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2025. 12. 11. 및 12. 12. 양일에 걸쳐 콜로키움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그 결과 67차로 예정된 제5실무작업반 회의는 5일 일정이 아니라 3일 일정으로 축소되었다(2025. 12. 8.부터 12. 10.까지).

당분간은 국제도산에서 준거법 논의가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